

##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

# 심 사 보 고

2001. 4.  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(2001. 4. 18)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)

가. 제안이유

충북의 산업구조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 
지식·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·육성 타운을 조성하기 위  
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빌딩 건립계획에 따라 2001년  
도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  
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  
획)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### □ 재산의 취득

#### ○ 오창과학산업단지 벤처빌딩 건립

- 위 치 : 오창과학산업단지 C&S Valley 벤처전용공단
- 규 모 : 1,500평 [지하1층, 지상4층]
- 용 도 : 벤처집적시설
- 기 간 : 2001. 7월~2003. 12월(30개월)
- 사 업 비 : 5,000,000천원
- 재 원 : 특별교부세 2,900,000천원, 도비 2,100,000천원

※ 도비확보 : 2001년 5억, 2002년 10억, 2003년 6억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#### ○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
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식·기술 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·육성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자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이나

⇒ 본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교부세 29억원을 제외한 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(안)

##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(안)

## 200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평, 천원)

구 분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 득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1	1,500	5,000,000	1	1,500	5,000,000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
	건물			1	1,500	5,000,000	1	1,500	5,000,000	
	기타									
처 분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
##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평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재산취득 소 유 자 주소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	1,500	5,000,000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오창과학산업단지 C&S Valley 벤처전용공단	1,500	5,000,000	2003.12	C&S Plaza 건물	충청북도	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

# 관 계 법 령 발 취

## 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</li> <li>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</li> </ol>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</li> <li>2 ~ 5호 생략</li> </ol>